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함(안 제23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